

2008. 3. 5(수) 10:00

 제145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거창군 친환경 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2008 - 9호》

거창군 친환경 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년 2월 21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
- 다. 회부일자 : 2008년 2월 26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8년 3월 4일
- 마. 의안번호 : 제2008 - 9호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이 동 순)

가.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공장현황

-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5-2번지

- 규 모
 - ▣ 부 지 : 460m²(무상임대 : 화강석재 강신곤)
 - ⇒ 부지임대 : 2007. 7. 1 ~ 2016. 6. 30(9년간 계약체결)
 - ▣ 건 물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1층 / 392m²
- 준 공 : 2007. 12. 28(준공식 : 2008. 1. 11)
- 주요시설 : 건 물 / 광촉매 코팅석 생산설비 등
- 용 도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 생산
- 소요예산 : 451백만원(기계설비 309, 건축물 138, 부대시설 등 4)

□ 운영계획

- 방 침
 -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원활한 관리·운영
 - ▣ (주)거창석재조합과 상호 협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업 추진
 -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수익사업을 통한 자립화 지원
- 개 요
 - ▣ 사업내용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사용·수익허가
 - 허가목적 :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의 원활한 생산 및 마케팅
 - 허가권자 : 거창군청 경제과장(행정재산 재산관리관)
 - 허가대상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이사장
 - 허가물건 : 부지 / 설비 / 건축물 / 부대시설
 - 허가기간 :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
 - ▣ 사업추진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와 수의계약
- 추진계획
 - ▣ 사용·수익허가 :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신청 ⇒ 처리
 - 조건부 허가 : 재산보존 책임 / 원상태로 반환 등
 -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 허가와 동시 부과
 - ▣ 손해보험증서 징구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방안 : 면 제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큰 거 내 용 〉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수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
- 시행령 제17조 제4항 : 제17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 :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전문위원 : 서 종 진)

- 이 동의안은 거창화강석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용료를 면제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 먼저 관련법을 살펴보면,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 및 제28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요건과 대부료 요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당해 시군을 대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의 경우 화강석의 가공생산은 거창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산물생산으로 보아 지고 이를 가공 생산하는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을 거창 화강석 특화육성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재)거창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공유재산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